



제426회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시·도의회 예산정책처 설립〉

■ 정춘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122호)

2025. 7.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순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정춘생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4. 12. 31.
3. 회부연월일 : 2025. 1.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만으로는 지방의회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시·도의회에도 국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기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연구·분석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하려는 것임(안 제10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국회법」 제22조의2(국회예산정책처) ① 국가의 예산 결산·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국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국회예산정책처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04조의2(시·도의회예산정책처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을 연구분석·평가하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의회 소속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둔다. ② 시·도의회예산정책처에 처장 1명과 필요한 지방공무원을 둔다. ③ 처장은 시·도의회의 의장이 시·도의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한다. ④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시·도의회예산정책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① 예산의 심의·확정, ② 결산의 승인, ③ 기금의 설치·운용 등을 규정¹⁾하고 있으나, 정책지원 전문인력²⁾

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³⁾ 외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분석·평가하는 지원기관은 규정하지 않음.

개정안은 시·도의회에 국회의 예산정책처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시·도의회예산정책처를 설치함으로써 예산·결산 등 재정활동에 관

1)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2)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2인당 1인이 배치되는 형태로 '22년 1월부터 운영 중임.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지방자치법」

제68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아닌 전문지식을 가진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에서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소관 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한다.

③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과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직무) 예산정책처는 국가의 예산결산·기금 및 재정운용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2.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3.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4.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5. 국회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한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도의회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하며, 지방재정 분야에 대해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분석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국회예산정책처 개요>

□ 연혁 및 설립목적

- (근거 및 연혁) 「국회예산정책처법」 제정('03.7.) 및 설립('03.10.)
- (설립목적) 국회의 국가 예·결산 심의를 지원하고, 국회 재정통제권을 강화하기 위해 비당파적·중립적으로 전문적 연구·분석 수행

□ 주요 업무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법률안 등 의안에 대한 소요비용의 추계
- 국가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의 분석 및 전망
- 국가의 주요 사업에 대한 분석·평가 및 중·장기재정소요 분석
-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 및 분석

□ 구성

- (처장) 국회의장이 정무직으로 임명(「국회예산정책처법」 제4조제1항)
※ 국회예산정책처장추천위원회가 추천 → 국회운영위원회 동의를 받아 임명
- (조직/정원) 2실 1국 1관·3담당관 17과, 138명('24년 예산, 222억 원)
※ (2실) 예산분석실·추계세제분석실 (1국) 경제분석국 (1관) 기획관리관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만,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예·결산 지원부서의 필요성⁵⁾,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⁶⁾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시·도의회예산정책처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부서를 운영 중에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모든 시·도의회를 대상으로 예산정책처를 설치하기

5) 2024년 시·도별 세입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최댓값(경기도, 976,776억 원)과 최솟값(세종특별자치시 21,630억 원)은 약 45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음.

6) 참고로, 2025년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운영비용은 연간 7억원이고, 경기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 운영비용은 5.3억원이며, 충청남도 예산정책담당관 운영비용은 1.87억원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예·결산 관련 업무량 등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그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지방의회 예·결산 관련 별도 지원부서 운영 현황>

	주요 업무
서울 (재정분석 담당관)	- 시·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국내외 지방재정운용 및 지역경제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 시·교육청, 공사·공단 등 주요사업 분석·평가 및 중·장기 재정소요 분석 - 위원회 또는 의원이 요구하는 소관사무와 관련한 조사 및 분석
부산 (입법재정 담당관)	- 예산, 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분석과 검토에 관한 사항
경기 (예산정책 담당관)	- 도·교육청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기금결산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예산·기금이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에 관한 사항 - 도·교육청 출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한 분석에 관한 사항 - 중·장기 재정소요 추계 분석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의 수립 및 조사와 분석에 관한 사항
충남 (예산정책 담당관)	-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분석 - 의원 및 위원회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 - 도 및 교육청 주요사업 분석 - 의원 및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중요 사항의 조사·분석
전북 (입법정책 담당관)	- 전북자치도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 교육청 예산·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대한 분석 - 재정·정책 자료 수집 및 분석
경북 (예산입법 담당관)	- 재정분석 및 예산정책 연구 - 예·결산 및 재정정책 조사 분석 - 예산·재정정책 정보 제공 - 의원 및 위원회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경남 (예산정책 담당관)	- 도 및 교육청 예·결산 분석 - 예산·결산 관련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 검토 - 재정분석 및 예산관련 정책연구 지원 - 예산 재정 동향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별도의 지원부서를 운영하지 않는 10개의 시·도의회(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남·제주)는 전문위원실에서 예·결산 관련 분석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료: 개별 시도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등을 바탕으로 작성

<2025년도 예산안 기준 시·도의회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시·도의회	예산액	시·도의회	예산액
서울	41,740	경기	109,455
부산	24,406	강원	19,752
대구	16,071	충북	21,135
인천	24,360	충남	25,943
광주	14,785	전북	18,500
대전	15,641	전남	22,591
울산	13,053	경북	25,359
세종	12,168	경남	27,404
		제주	25,405

※자료: 시·도의회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또한, 개정안은 시·도의회예산정책처의 역할로 ‘예산 및 결산에 관련된 사항’에 대한 연구분석·평가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에는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및 지방재정의 운용 전반에 관한 전문성 제고 필요성⁷⁾을 고려할 때, 국회 예산정책처와 같이 ‘기금 및 재정 운용과 관련된 사항’의 연구분석·평가 또한 시·도의회예산정책처의 역할로 포함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

(단위: 억원, 개)

	2019	2020	2021	2022	2023
일반회계	2,034,931	2,397,047	2,497,281	2,674,105	2,628,095
특별회계	418,248	454,771	509,876	513,821	537,203
기금조성액 (기금 수)	408,543 (2,403)	388,863 (2,400)	482,309 (2,413)	563,800 (2,431)	597,563 (2,636)
합계	2,861,722	3,240,681	3,489,466	3,751,726	3,762,861

※자료: e나라지표

7) 최근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실태분석 및 발전방안 : 상주시의회를 사례로」, 대한지방자치학회, 2023., 문재태, 「지방의회의 전문성 제고방안 : 지방의회의 견제기능 회복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정부학회, 2019., 최근열, 「지방의회의 위상강화를 위한 발전과제 : 지방자치법 개정을 중심으로」, 대한지방자치학회, 2011. 등 참고

참고로, 행정안전부는 시·도의회예산정책처의 설치와 관련하여, 정책 지원 전문인력·예산 전담 부서 등 기존 인력·조직과의 역할 중복 소지 및 국가-지방예산의 차이점⁸⁾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34

8) 지방예산의 경우, 정책적 분석·판단 필요성이 높은 재량지출(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정해지는 의무지출 이외 모든 지출) 비율이 국가예산보다 10%p이상 낮음(국회예산정책처, 「2024 대한민국 재정」)